「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서비스」이용 약관 변경전.후 대비표

2015.08.25 시행

2016.09.13 변경

2017.06.01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11조 (특약사항) [ ] 201 년 월 일 판매자: _____ 대표이사: _____ 은행: ㈜하나은행 지점 지점장:	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 201 년 월 일 판매자: _____ (인) 대표이사: _____ 은행: ㈜하나은행 지점 지점장:	계약자 기재 및 날인 위치 변경
제9조(유효기간)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(1) 년으로 하고,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.	제9조(유효기간)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(1)년으로 하고,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.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,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.	문구추가